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재외동포청 소관에서 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외국인 입국사증 업무 처리 및 외교부와 법무부 간 협력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상 법무부 파견 인력 1명(7급)을 외교부로 이체하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2024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행정주사보·출입국관리주사보·관세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0”을 “9”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1”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① ~ ④ (생 략) ⑤ 동포지원제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u>7.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u> ⑥ · ⑦ (생 략)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⑥ · ⑦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표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 · 출입국관리주사보 • 관세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3 등 급 • 4 등 급 영사직 ·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 • <u>10</u>	• • <u>9</u>	-1
• • <u>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u>	• • <u><신 설></u>	• • <u>1</u>	+1